[일련번호 : 1]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조직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레슬링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레슬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레슬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규약」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조직 운영에 있어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52조(규약변경),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에는 기본적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침에 대한 내용과 규약, 규정 등의 제·개정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및 협회 「규약」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결과 규약 및 기타규정의 관리, 각종위원회의 구성 등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가. 규약(기본규정) 등 개정 미흡

본회「경기도종목단체 규정」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제1항에 의거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규약은 ****년도 승인된 규약으로 ****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개정해야할 항목들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경우 ****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사용 중으로 최신화가 필요하다.

나. 기타규정의 부존재

협회는 규약 제50조(규정제정), 본회「경기도종목단체 규정」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규약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협회는「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회장선거관리 규정」이외 다른 규정을 일체 제정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각종위원회 미구성

본회「경기도종목단체 규정」제37조에 의거,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년 *월) 경기력향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 되었으며, 특히 본회「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 보상금 지원」, 공모 및 장학 사업 등에서 대상자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레슬링협회장은

다음의 3가지 미흡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본회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약(기본규정)의 개정 미흡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규약」,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규정의 부존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시책 등을 절차를 준수하여 제정하기 바랍니다.

다. 각종위원회 미구성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한 이사회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레슬링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레슬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규칙, 「경기도레슬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에 따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레슬링협회는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및 같은 법 훈령(제43조)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또한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1]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비의 회계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계처리 부적정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 대회기간내에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를 1건으로 사용하여 항목과 상관없이 회계처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의 결재를 득할 시 무인, 서명,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하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재자의 서명을 스캔하여 사용하였다.

두가지 지적사항의 회계처리는 관련 법령 및 규칙상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레슬링협회장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년도부터 ****년도 국도비 및 자체비 회계서류 원본 관리를 하고 이를 본회를 통해 보고하기 바라며,

아울러 ****년도부터 각 지출별 품의 및 지출을 실시하고 기안자 및 결재자의 지출 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조 치

[제　　목] 문서(기록물) 관리 소홀

[소 속 기 관] 경기도레슬링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레슬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레슬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50조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도 함께 진행하여 협회의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규약」 제50조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미사용

협회는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하여 있고 담당직원(사무장)이 상주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본회 스포츠지원부 종목육성팀에서 경기도종목단체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예산·회계 기록물 증빙 부실

본회에서 지원하는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등의 사업에서 지출되는 항목의 증빙서류가 원본 상태가 아닌 입금증으로만 증빙하고 원본을 증빙자료로 쓰지 않고 가공된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레슬링협회장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실한 증빙자료 및 기록물에 대한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년 하반기(*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 기 도 체 육 회

권 고 조 치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레슬링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레슬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레슬링협회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약」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는 회계 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 규정」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사무장,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레슬링협회는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보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레슬링협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협회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